



제도 보완 시급하다



문창재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문제의 제기

대학 입시전형에서 재외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내국인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모 외국인 학교 출신 내국인 학생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서울의 여러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일어난 것이다.

그 외국인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렇게 시끄러울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이 편법으로 외국인 학교에 들어가, 재학중 취득한 정보와 그 학교 간부가 관련된 브로커 조직을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특례 제도를 악용한 신종 부조리로 부각되었다. 같은 조건, 같은 여건 아래서 공정히 경쟁해야 할 민주사회의 룰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파렴치한 파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그들의 학부모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일부터 대학 특례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일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던 것이다. 처음 한 두 학교의 몇몇 학생에 국한된 일로 알려졌던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10개가 넘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50명이 넘는 학생이 부정 입학한 조직적, 상습적 비리였음이 드러났다.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고 외국 소재 학교의 가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 준 외국인 학교 간부가 구속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관련 학부모 8명이 구속 기소되고, 22명이 불구속 기소된 일도 입시 부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되었던 학부모들이 법정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입시 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었다.

그런 불법은 작년 한 해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가 대학 자율로 맡겨진 '97년 이래 매년 되풀이 돼 왔으며, 특례 입학생 증

“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2002년부터 폐지되면 대학의 자율폭이 더 커져 어떤 편법과 탈법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최근 외국인 학교의 급증과 내국인 재학생 수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

가에 따라 부정 입학자 수도 늘어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 사립 명문 대학의 경우 '97년 36명에 불과하던 12년 해외 수학 특례 입학자가 2001년에는 10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대도 21명에서 63명으로 같은 비율로 늘었다. 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허용된 데다, 등록금 수입이 싫지 않은 대학 당국으로서는 지원자를 물리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학사 경고와 자진 휴학, 퇴학생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었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12년 해외 수학자 특례 입학생 실태에 관한 최근 조사를 보면 8개 대학 556명의 등록 학생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24명이 자퇴 또는 휴학했다. 재학생 391명 가운데 123명(32%)은 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받았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는 학사 경고자가 50%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2002년부터 폐지된다는 점이다. 5년 한시법으로 운영돼 온 이 조항이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대학의 자율폭이 더 커져 어떤 편법과 탈법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최근 외국인 학교의 급증과 내국인 재학생 수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 외국인 학교 수는

60여 개교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중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는 20여개 뿐이다.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내국인이 설립한 학교가 많은 것이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학교에는 한국인 학생이 너무 많아 외국인 학교인지 한국인 학교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다.

서울 강남의 한 학교는 재학생의 95%가 한국계다.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순수 내국인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류상으로만 외국가정에 입양된 학생 등 편법으로 자격을 얻은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입학한 무자격 학생들도 많다.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입학한다고 하지만, 대학 특례 입학 기회를 얻으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학원가의 숙덕거림이다. 조기 유학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이 계기가 되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수업료 부담에 수천 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들어가는 학생이 많다고 한다.

외국인 학교 졸업만으로 특례 입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대학에 간 졸업생이 있고, 그 방법을 알선하는 조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와 자료를 얻기도 쉽다는 소문이 돌아 돈 가진 학부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 허점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란 말 그대로 외국에 사는 국민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는 특혜다. 이 제도는 외교관, 상사 주재원, 국제 기구 또는 외국 정부 근무자 등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와, 외국에서 12년 이상 공부한 교포 자녀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만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구분돼 있다. 전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몇 년 동안 외국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국내 학교에 다닌 학생들에 비해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 같은 여건의 수험생들끼리 경쟁시켜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국가를 위해 타국에서 일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도 있고, 해당 국가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특기자로 선발한다는 측면도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모두 외국에서 공부한 교포 자녀와,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학문이나 한국학, 동양학 등을 공부하려는 순수 외국인을 위한 특례 제도는 초·중등 전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한 사정을 감안해 무시험을 원칙으로 서류 전형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도입 취지에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후자의 경우 무시험 전형이라는 이점을 노린 내국인들의 악용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제도를 더욱 보완해 악용의 여지를 없애면 그만이지, 문제가 있다고 제도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

먼저 2년 이상 해외 근무자 자녀 특례 제도는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자격 기준은 외교관이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됐거나, 정부 투자 기관,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지사나 금융 기관 임직원, 국제 기구나 외국 정부 근무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유학 연수 해외 취업 등의 경우까지 포함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입학 허용 기간 적용에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 고교 졸업 또는 재학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재학 사실만 있는 경우 국내에서 졸업한 고교의 졸업 학년도 시작일부터 2년 반까지만 특례를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3수, 4수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이 제한 기간을 해제해 혼란이 일고 있다. 외국어 구사 능력 우수자를 유치하자는 전략이지만, 한 두 번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무한정 특례를 주는 것이 형평성 시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외국 체류중 가족과의 동거 여부에 관한 사항도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다. 가령 제 3세계 국가 파견자가 자녀를 미국이나 유럽 학교에 보냈을 경우, 자녀만 외국 학교에 다니고 부모는 귀국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꼭 그럴 사정이 있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가족 동거 여부와 체류 기간 등을 따지지 않는 대학이 많이 늘어 났는데, 이 역시 외국 학교 출신을 유치할 목적으로 보인다.

외국 학교 12년 재학자의 경우는 체류 기간, 직업, 가족 동거 여부 등을 따질 필요가 없는 대신 제출 서류의 진위를 철저히 기릴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2년 이상 외국 수험자들처럼 별도의 선발고사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졸업후 자기가 살던 나라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력이나 학업 성취도를 그들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가 대학 자율에 맡겨진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무시험 전형을 폐지하고 지필 고사 성적순으로 뽑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다. 각 대학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내국인 학생들을 철저히 막는 장치만 하면 그만이다.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이 제도 운영에 모범이 된 대학들의 방식이 해결책을 보여

준다. 이들 대학은 한국어 강의 청취 능력과 해외에서 익힌 영어 실력을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간단한 어학 시험을 부과했다. 강화된 면접시험을 통해 외국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도 했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두 합격시켜도 그만이었지만 수학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탈락시켰다.

지금까지 제시된 보완 방법론은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고, 면접시험 부과 등으로 일정 수준의 외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강대 등의 방법을 원용키로 한 것이다.

각론을 보면 선발 인원을 줄이고, 서류 심사 기간을 늘이고, 해당 국가 언어로 면접을 실시하고, 간단한 논술 시험을 병과하며, 비영어권 국가의 입학 서류를 영어로 발급케 하거나, 출신 학교장이 직접 대학으로 발송케 하고,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 기록 조회를 실시하거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정도면 가짜 교포 학생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지금까지 각 대학이 서류 심사와 출입국 사실 조회만 했어도 적발할 수 있었다는 자성의 소리가 있었다. 출입국 관리 당국에 따르면 출입국 관련 자료가 모두 전산화돼 있어 조회 의뢰가 있으면 간단히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대입 특별전형과 관련된 사실 조회 의뢰는 거의 없었다 한다.

졸업 및 성적 증명서에 관한 조회도 해당국 공관에 상주하는 교육관 등을 통하면 조회가 가능한 데도 이 역시 한번도 의뢰된 사실이 없었다.

대학 당국자들은 촉박한 학사 일정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심사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전형 일정 시작을 앞당기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 정원을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집 인원을 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에 관한 사항이지만, 비율을 너무 줄여 해외 유학생들에게 좁은 문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완 방법론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전형 업무 창구 직원들이 부정 입학 브로커들에게서 돈을 받고 가짜 서류를 눈감아 준 사실이 있다는 수사 결과가 말해 주듯, 불법이 묵인된 데는 그런 부정이 있었다. 정규 입시 업무에 비해 너무 비중이 적어 관심을 쏟지 못했던 탓에 일어난 실수라고 보아줄 수 있겠다. 앞에서 전제했듯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는 필요한 제도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한 제도적인 허점들을 보완하고 운영의 묘를 찾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싶다. **김영**

문창재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게이오 대학 신문연구소를 수료하였다. 한국일보 주일특파원, 국제·사회·정치2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동경특파원 보고서』, 『지구촌 한국인』(공저) 등이 있다.